

위임전결규정

제정 1998.
개정 2006. 1. 1.
개정 2006. 6. 19.
개정 2008. 3. 19.
개정 2012. 7. 1.
개정 2016. 03.14.
개정 2017. 3. 30.
개정 2021. 11. 15.

제1조(목적) 이 규정의 목적은 청강문화산업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제반문서의 결재에 관한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업무의 신속과 행정의 능률화를 기함에 있다.

제2조(결재권의 위임) 총장은 문서의 중요도에 따라 이를 행정부서장, 스쿨원장 또는 부속기관장에게 결재권을 위임할 수 있다.

제3조(책임) 위임받은 전결권자는 전결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4조(중요사항) 전결권자는 전결사항이라 할지라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은 사전 구두 또는 문서로 총장의 지침을 받아 전결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경미한 사항)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전결권자는 그 경중 정도에 따라 전결할 수 있다.

제6조(보고) 전결 처리한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수시로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협조) 전결사항 중 타 부서와 협조를 요하는 사항은 협조를 받은 후 처리한다.

제8조(결재권자의 부재) 전결권자의 결원, 출장, 기타 유고시에는 전결권자가 속해 있는 부서의 차하위 직에 있는 자가 대결한다. 다만,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전결권자의 후결을 받아야 한다.

제9조(전결사항) 전결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 칙

- ① 이 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이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③ 이 규정은 2006년 6월 1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2006년 3월 1일 이후는 이 개정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본다.)
- ④ 이 규정은 2008년 3월 1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⑤ 이 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2012년 3월 1일 이후는 이 개정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본다.)

⑥ 이 규정은 2016년 3월 1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⑦ 이 규정은 2017년 3월 3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단, 개정일 이후 결재상황에서 위임전결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즉시 반영한다).

⑧ 이 규정은 2021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서별 위임전결 사항 <삭 제>